

마을중심 여성·건강카페 조성사업 공모계획

마을중심 여성·건강 카페를 조성·운영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및 여성 자조모임에 대한 공간·활동을 지원하고,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

I 사업 개요

추진근거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조 및 제34조
- 「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추진방향

- 조성 공간 개방을 통해 여성 및 여성자조모임을 위한 공간의 안정적 지원
 - 편안하고 아늑하게 조성하여 정보공유 등 여성을 위한 사랑방 역할
 - 자조모임(부모커뮤니티, 공동육아,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) 공간 부족 해소
-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여성의 관심 제고 및 여성친화적인 모임 유도
 - 지역내 지원기관(보건소, 건강가정지원센터 등) 운영 프로그램 연계 추진
 - 소비적,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체험 및 연습공간으로 활용
-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 공간 발굴 확대 및 공간의 공공성 확보
 - 공간 유지의 부담이 적고, 지역 인프라 활용이 용이한 공공시설 발굴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15. 9월 ~ 12. 31.(정산, 평가기간 포함)
- 사업규모 : 총 270백만원
- 지원규모 : 공간별 5천만원 내외
- 지원내용 : 공간 조성비용(리모델링비, 시설비, 물품구매비)
- 추진방법 : 자치구 협조 하의 제안자 공개 모집(공모)
- 신청자격 : 3인 이상 주민(모임), 비영리단체(법인), 협동조합, 자치구 등
- 신청방법 : 해당 자치구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

II 세부내용

□ 기능 및 역할

- 공통 관심사(건강, 육아 등) 교류·소통 및 정보 공유 공간
- 여성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모임 공간 지원 및 모임 조성 유도
- 운영 프로그램의 체험 및 참여 등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 공간

□ 공간 현황

- 신청공간 : 자치구청, 주민자치센터, 문화센터, 사회복지법인, 종교시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내 유휴공간
- 규 모 : 99㎡(30평) 이상 규모
- 조 건 : 안전한 환경 및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의 공간으로,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3년간 운영 유지 담보

□ 공간 운영

- 공간구성 : 카페·보조 공간(주방)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분리



※ 협소한 공간의 경우 이동식 칸막이 설치 등으로 공간 활용 극대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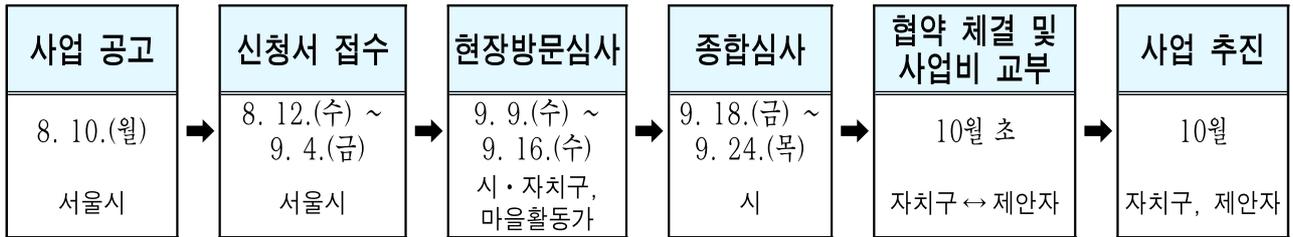
- 운영계획 : 수익사업(카페 등), 자부담 등 공간 운영비 자체 조달 계획
- 운영인력 : 메뉴, 프로그램 기획·운영이 가능한 인력
 - ※ 다양한 모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자조(주민)모임, 풀뿌리단체, 마을활동가, 지역 내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'카페 운영위원회' 구성을 권장
- 프로그램 :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여성친화적인 모임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

건 강	보건교육(만성질환, 폐경기, 관절염), 체조교실, 우울증 관리 등
보 육	부모교육, 부모-자녀 놀이 프로그램, 친환경 간식 등
사회적경제	나눔 장터(행복한 마켓), 박스숍(공동판매장)
기 타	캔들라이트, 친환경 강좌, 북 콘서트 등

※ 지역 내 지원기관(건강가정지원센터, 보건소, 민간단체 등)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

III 공모 추진계획

□ 추진절차



□ 신청대상

- 지원대상 : 자치구, 공공기관 및 민간 소유의 유휴공간을 확보하고, 해당 지역, 여성에게 적합한 자조공간을 조성하려는 자
- 신청자격 : 3인 이상 주민(모임), 비영리단체(법인), 협동조합, 자치구 등
 - 서울시에 거주(소재)하거나 생활권(직장, 학교 등)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
 - ※ 주민제안은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가능하며, 1년 이내 단체(협동조합) 등록 필요
 -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법인설립허가증 소지 단체
 - 사회적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

▶ 제안자는 반드시 공간제공자의 협의 하에 신청	※ 공간 확보(3년) 증빙서류 제출
▶ 운영자와 공간제공자는 동일할 수도 있으며, 운영자의 경우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(예 : 부모커뮤니티-보육반장 연합)	
공공기관 연계형	자치구청, 주민자치센터, 문화센터, 복지센터, 영유아플라자, 지하철 역사 등
민간기관 연계형	사회적경제 조직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), 여성친화기업 등

□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- 사업 공고 : '15. 8. 10.(월)
 - 홈페이지 공고 게재(서울시, 여성가족정책실)
 - 25개 자치구 공간 추천 및 홍보 협조 요청
- 신청서 접수 : '15. 8. 12.(수) ~ 9. 4.(금) (24일간)
 - 신청방법 : 해당 자치구(자치구청 여성가족과)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※ 우편접수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이현정(우편 소인날짜 9. 4.(금)까지 인정)
 - 제출서류 : 자치구 추천서, 공간 현황, 운영계획 등

□ 지원 내용 및 규모

- 지원내용 : 공간 조성 비용(리모델링비, 시설비, 물품구매비)
 - ※ 임차료, 운영비, 사업비 미지원
 - ※ 공간 조성 완료 후, 최소 3년간 '여성 자조공간' 운영 유지 담보
- 지원규모 : 공간별 5천만원 내외

□ 사업 심사

- 현장방문 심사
 - 기간 : '15. 9. 9.(수) ~ 9. 16.(수)
 - 조사자 : 시·자치구담당자, 마을활동가(3인 1조) 합동점검
 - 점검내용 : 접근성, 공간 특성, 주변 환경 등 조성 공간 적합성 점검
- 종합심사 : 서면심사 및 집합심사
 - 기간 : '15. 9. 18.(금) ~ 9. 24.(목)
 - 심사위원 :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 이내 구성
 - 심사내용 : 공간 적합성, 주체 적합성, 사업 타당성 등
 - 심사방법 : 현장방문심사 및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합심사에서 선정단체 및 사업비 결정

□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

- 실행계획서 제출(제안자 → 자치구)
- 협약체결(제안자 ↔ 자치구) : 표준 협약서 준용하여 체결
- 사업비 교부(시 → 자치구 → 제안자)

□ 사업평가

- 평가시기 : '15. 12월
- 평가항목 : 계획대비 실행정도, 네트워크 형성, 지속가능성 등
- 평가방법 : 사업추진 자체평가, 외부전문가 평가, 주민 만족도 평가 등
- 평가결과 : 우수사례 발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미흡사항 보완 조치 반영

IV 추진 일정

- 사업공고 : '15. 8. 10.(월)
- 신청서 접수 : '15. 8. 12.(수) ~ 9. 4.(금)
- 현장방문심사 : '15. 9. 9.(수) ~ 9. 16.(수)
-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: '15. 9. 18.(금) ~ 9. 22.(화)
- 심사위원회 집합심사 : '15. 9. 24.(목)
-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: '15. 10월 초

V 행정 사항

- 자치구 참여 협조 요청
 - 마을중심 여성·건강카페 조성사업 공모 홍보
 - 유희 공간 파악·제공
 - 제안자 대상지(공간) 추천서 작성
 - 신청 대상지(공간) 현장실사 협조

마을중심 여성·건강카페 조성사업 공모 시행 공고문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- 호

마을중심 여성·건강카페 조성사업 공모 시행 공고

서울특별시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'마을중심 여성·건강카페 조성사업'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(모임)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5년 8월 10일
서울특별시

1. 총사업비 : 2억 7천만원
2. 사업기간 : '15. 9월 ~ 12월 (※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)
3. 지원액 : 공간별 5천만원 내외
※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
4. 지원내용 : 공간 조성 비용(리모델링비, 시설비, 물품구매비)
※ 임차료, 운영비, 사업비 미지원
※ 공간 조성 완료 후, 최소 3년간 '여성 자조공간' 운영 유지 담보
5. 지원대상 : 자치구·공공기관 및 민간 소유의 유휴공간을 확보하고, 해당 지역·여성에게 적합한 자조공간을 조성하려는 자
6. 신청자격 : 3인 이상 주민(모임), 비영리단체(법인), 협동조합, 자치구 등
-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(직장, 학교 등)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
※ 주민제안은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가능하며, 1년 이내 단체(협동조합) 등록 필요
-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
- 사회적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
- ▶ 공간 제공자 : 유휴공간을 소유한 자치구 또는 유휴공간을 운영자에 무상 임대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
- ▶ 운영(예정)자 :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·여성에게 적합한 자조공간을 운영하려는 자로 자치구, 3인 이상 주민, 비영리단체(법인), 협동조합

공공기관 연계형

자치구청, 주민자치센터, 문화센터, 복지센터, 영유아플라자, 지하철 역사 등

민간기관 연계형

사회적경제 조직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), 여성친화기업 등

※ 운영자와 공간제공자의 협의 하에 신청하여야 하며, 운영자와 공간제공자는 동일할 수도 있으며, 운영자의 경우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(예 : 부모커뮤니티-보육반장 연합)

7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' 15. 8. 12.(수) ~ 9. 4.(금) (24일간)
- 신청방법 : 해당 자치구(자치구청 여성가족과)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※ 우편접수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(우편 소인날짜 9. 4.(금)까지 인정)

8. 제출서류

- ① 자치구 추천서
- ② 사업 제안자 소개
- ③ 사업계획서(공간 현황 및 공간운영 계획)
- ④ 공간확보 증빙서류(장소 사용 승낙서, 무상임대 협약체결서 등)
- ⑤ 단체(법인) 등록증 사본(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)

〈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〉

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, 민간임대일 경우 무상임대 협약체결서(계약서),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 승낙서 등

9. 신청공간 현황

- 신청공간 : 자치구청, 주민자치센터, 문화센터, 사회복지법인, 종교시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내 유휴 공간
- 규 모 : 99㎡(30평) 이상 규모
 - ※ 단, 자치구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가능
- 조 건 : 안전한 환경 및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의 공간으로,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3년간 운영 유지 담보

10. 사업선정 심사기준

- 선정기준 : 공간의 적합성, 주체의 적합성, 사업의 타당성 등
 - ※ 지역 자조모임(풀뿌리 단체)과 구체적인 연계방안 제안시 심사점수 가점 부여
 - ※ 선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- 심사방법 : 사전 현장방문 심사 후 종합 심사
 - 현장방문심사 : 시·자치구 담당자, 마을활동가(3인 1조)
 - 종합심사 :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및 집합심사

11. 결과발표 : ' 15. 9. 25(금) (예정)

- 서울시(www.seoul.go.kr) 및 여성가족정책실(<http://woman.seoul.go.kr>) 홈페이지 공지
- 해당자치구 및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

12. 유의사항

-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(Email : hj0892@seoul.go.kr, ☎ 2133-5013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【붙임 1】

마을중심 「여성·건강 카페」 추천서

추천 기관		
자 치 구		
추 천 이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	
사업예산	총사업비	원
	보 조 금	원
	자 부 담	※ 자율 편성 원
대상지 특성	주변 주거 형태	주택가 밀집지역, 아파트 단지 내 위치
	공간 위치 접근성	버스정류장 근처, 지하철 도보 5분 이내
	이용 가능 수	
	기타 특이사항	
기 대 효 과		
카페와 자치구의 협조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프로그램 연계 협조 방안, 사업추진 협조 방안 등 ○ 	

2015. 8.

추 천 인 소속 직급 성명 (인)

 소속 직급 성명 (인)

【붙임 2】

제안자 소개

제안자				
소재지				
대표자				
설립연도				
설립목적				
제안자 현황	주민모임		단체현황	
	◦ 운영자수 : 명		◦ 상근 활동가 수 : 명	
	◦ 회원 수 : 명		◦ 임원 수 : 명	
	◦ 회원 수 : 명		◦ 회원 수 : 명	
주민모임 연대서명	성명	연락처	이메일	주소
주요 활동분야	◦ ◦ ◦			
전년도 활동내용	◦ ◦ ◦			

※ 제안자가 주민모임인 경우, 작성 가능한 부분 작성

※ 단체 및 법인의 경우 단체등록증 첨부

【붙임 3】

대상지(공간) 현황

건물 현황			
건 물 명			
주 소			
시 설 주		담 당 자	
	☎	* 00주민센터 담당 및 건물관리인	☎
건물 개폐시간			
활용가능 면적	층(* 층수 기재 층)		m ² (평)
현재 활용 용도			
건물사진			
외 관		출 입 문	
활용공간 1		활용공간 2	

【 붙임 4 】

대상지(공간) 운영 계획

공간 구성	예) 카페, 세미나 룸 2, 주방 등		
프로그램 운영	추진 기간(일시)	추진 내용 및 방법	
세부 프로그램 1 (※프로그램 명 기재)			
세부 프로그램 2			
세부 프로그램 3			
홍보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		
자치구 내 타 주민모임/단체와의 네트워크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 		
산출내역	항 목	산출내역	금 액
총 계			
시설비			
물품구매비			